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김진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608

발의연월일: 2020. 7. 31.

발 의 자:김진표·김영주·조응천

김승원 · 조승래 · 김두관

강선우 • 이낙연 • 민홍철

박 진 · 어기구 · 김정재

송갑석 • 박성준 • 윤재갑

홍익표 • 박 정 • 이상민

임호선 · 정필모 · 이달곤

전혜숙 • 박주민 • 신정훈

김철민 · 도종환 · 정정순

김종민 · 김석기 · 변재일

송영길 · 이용빈 · 이규민

안병길 · 이은주 · 신영대

김승남 • 주철현 • 김수흥

김원이 · 소병훈 · 강대식

전재수 · 임오경 · 소병철

박완주 • 홍기원 • 박홍근

권칠승 · 홍문표 · 정진석

한기호 · 홍정민 · 윤준병

장혜영 · 이상직 · 김병욱

홍준표 • 이소영 • 송기헌

박덕흠 · 송옥주 · 양향자

송재호·고민정·정춘숙

권성동 · 노웅래 · 김성환 윤호중 • 이철규 • 김용판 전주혜·백혜련·이채익 안민석·한준호·장경태 조오섭 • 백종헌 • 강민정 민형배 · 홍석준 · 정성호 이명수・김홍걸・서범수 서동용・황보승희・서병수 권영세 · 이개호 · 이수진 박재호 · 이해식 · 이헌승 이병훈 • 전용기 • 김병기 전해철 · 서일준 · 김영배 이성만 · 강득구 · 윤영찬 이원욱 · 정태호 · 문진석 성일종・설 훈・김상훈 진성준 · 위성곤 · 김교흥 오영훈 · 김선교 · 이용선 안규백 · 고용진 · 강민국 강병원 · 박광온 · 이타희 홍영표 • 유기홍 • 신동근 김병주 · 김민철 · 윤관석 유동수 • 윤후덕 • 안호영 김성주 • 이정문 • 이재정 김기현 · 김경만 · 강훈식 김용민 · 양금희 · 황운하 하영제 • 한정애 • 박완수 윤한홍ㆍ이인영ㆍ이상헌

홍성국 • 기동민 • 심상정 이양수 · 강준현 · 민병덕 김정호 · 김형동 · 맹성규 김민석 · 박찬대 · 양경숙 최종윤 · 김희곤 · 조해진 유상현 · 허종식 · 양기대 허 영 · 윤영석 · 김태호 장철민 · 임종성 · 박영순 이장섭 · 강기유 · 박대출 박범계 · 김성원 · 양정숙 김회재 · 김주영 · 정점식 서영교・김윤덕・야전(비) 배진교 · 최인호 · 김남국 최형두・이용호・고영인 엄태영·강은미·이 영 최강욱・우상호・김민기 진선미 · 이원택 의원 (197인)

제안이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이하 "방송통신대학교"라 한다)는 국립대학으로고등·평생·원격교육기관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국내에서 유일한 형태의 대학이고,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일컬어지는 급격한 교육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현재 기존 대학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으로서 기능할 수 있어 주목을 받고 있음.

하지만, 현재 방송통신대학교는 그 설치 근거가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고 기본 조직 등 단순한 조직규정으로 되어 있어 증대하는 방송통신대학교의 역할 및 그 특수성을 반영하기가 미흡하고, 기본적으로 대학은 법에 설립기준과 대학운영에 필요한 시설·교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방송통신대학교는 비적용 대상임.

이에 기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방송통신대학교의 책무와 운영기준, 특수성 등을 명시하는 제정법을 마련함으로써 방송통신대학교의 국립 고등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 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교육기본법」에 따라 국민의 학습권 보장과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하는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교육부장관 소속 국립학교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이하 "방송통신대학교"라 한다) 소재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2조).
- 다. 국민의 학습권 보장, 국가의 평생교육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한 방송통신대학교의 책무 등을 규정함(안 제3조).
- 라. 방송통신대학교의 총장, 부총장, 교원 등의 운영기준, 공무원의 정원에 대한 규정을 둠(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마. 방송통신대학교의 수업 등과 단과대학, 부속시설 등, 하부조직에 대한 규정을 둠(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제1조(목적) 이 법은「교육기본법」 제9조,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민의 학습권 보장과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하는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①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국립학교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이하 "방송통신대학교"라 한다)를 둔다.
 - ② 방송통신대학교의 소재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조(방송통신대학교의 책무 등) ① 방송통신대학교의 장은 국민의학습권 보장, 국가의 평생교육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방송통신대학교의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방송통신대학교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이행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방송통신대학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② 방송통신대학교의 설립·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국립대학

- 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등 고등교육 관련 법령에 따른다.
- 제5조(학교의 장) ① 방송통신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 ②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 제6조(부총장) ① 방송통신대학교에 총장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방송통신대학교의 교수 중에서 부총장을 둘 수 있다.
 - ② 부총장은 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부총장은 대학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사 등일부의 권한에 대하여 총장의 위임을 받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 제7조(교원 등의 운영기준) 방송통신대학교에 두는 교원과 조교의 운 영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공무원의 정원) 방송통신대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 제9조(수업 등) ① 방송통신대학교의 수업은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출석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으로 한다.
 - ② 그 밖에 학사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 제10조(단과대학 등) ① 방송통신대학교에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단과대학을 두고 단과대학에 학과 및 학부 등을 둘 수 있다.

- ② 방송통신대학교는 「고등교육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특수 대학원을 둘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단과대학·대학원 및 학과·학부 등에 장을 두되, 단과대학 및 대학원의 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학과· 학부의 장은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보한다.
- ④ 단과대학 및 대학원의 장은 총장의, 학과의 장은 단과대학 또는 대학원의 장의 명을 받아 해당 단과대학·대학원 및 학과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 ⑤ 그 밖에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 제11조(부속시설 등) ① 총장은 방송통신대학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원시설·연구시설·부속시설 및 그 밖의 필요한 시설 (이하 "부속시설등"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 ② 부속시설등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하부조직) 방송통신대학교에 두는 하부조직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장은 해당 기관에 재직 중인 방송통신대학교 학생의 출석수업에 관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협조하여야 한다.
 - ② 방송통신대학교의 교육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학칙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에 협력학교를 둘 수 있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고등교육법」 제2조 및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라 설치된 종전의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이 법에 따른 한국방송통신대학교로 본다.
- 제3조(재학생 및 졸업생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한국방송 통신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은 이 법에 따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의 재학생 및 졸업생으로 본다.
- 제4조(교직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한국방송통신 대학교에 재직 중인 총장·교원·직원 및 조교는 이 법에 따른 한 국방송통신대학교의 총장·교원·직원 및 조교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장은 「교육공무원법」제 28조제1호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 동안 이 법에 따른 한국방송통 신대학교 총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 제5조(권리와 의무의 승계) 이 법 시행 당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속하였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이 법에 따른 한국방송통신대학교가 승계한다.